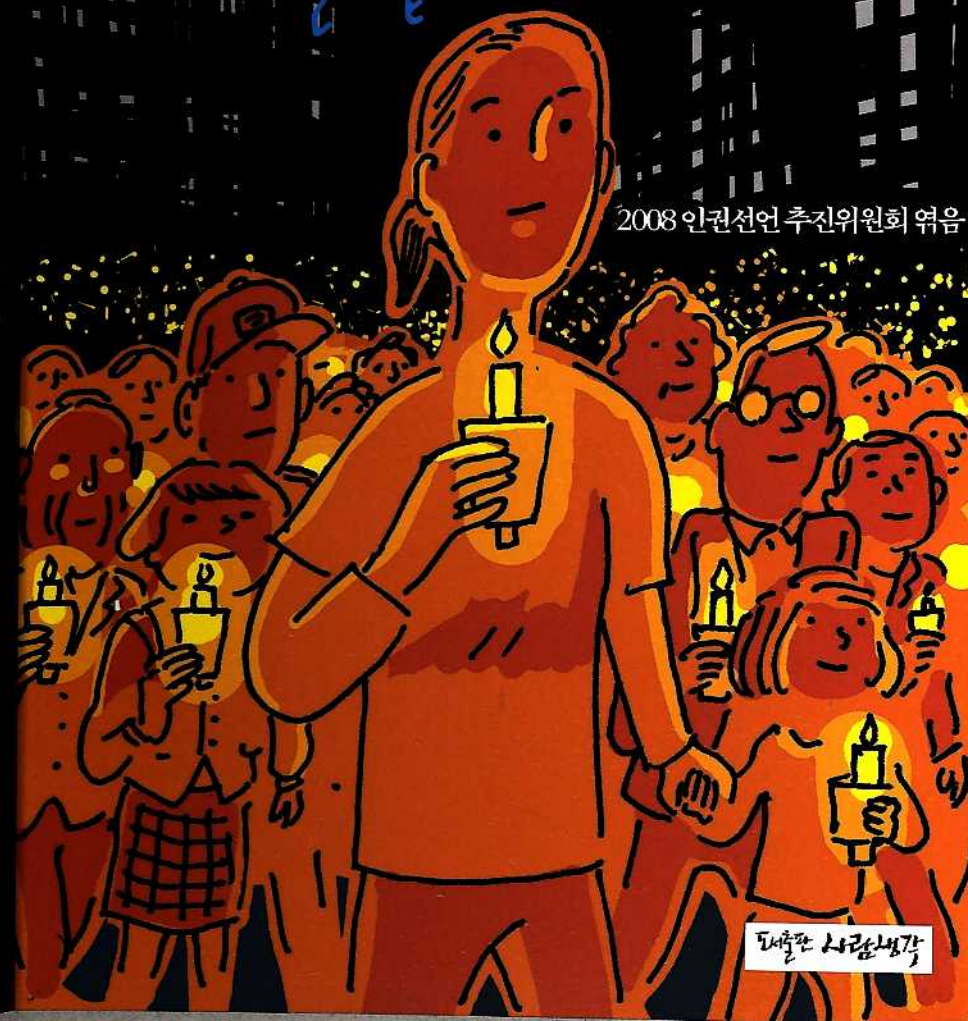


2008
인권선언

2008 인권선언

어두운 세상을 밝히자!

2008 인권선언 추진위원회 엮음



도출판 사립출판사

도출판 사립출판사

2008
인간 선언
어둠을 밝히는 세상을 노아라!



2008 인권선언 추진위원회

인권사회단체들이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2008 인권선언 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만들었다.

참여단체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준비단, 금융체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우지개발동, 세계 주거의날 기획단, 외국인야주 노동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여성공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구정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환우회사랑방

2008 인권선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첫판 1쇄 2009년 12월 10일
엮은이 2008 인권선언 추진위원회
펴낸이 김철환
펴낸곳 도서출판 사람생각
편집 김정아 최은아 한계영
표지 그림 김대중
디자인 박준도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85-13
전화 031-211-5855 / 02-363-5855
홈페이지 hfund.or.kr

ISBN 978-89-88686-52-2 03300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드립니다.

2008
인권선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 이 책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인권선언들을 엮은 것입니다. 책에 포함된 DVD는 2008년 12월 10일 청계광장에서 상영했던 영상 <2008 인권선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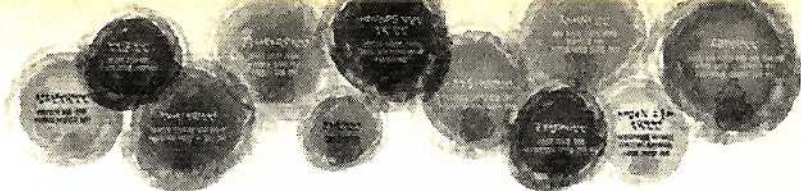
머리말

2008 인권선언, 평등한 자들이 만드는 잔치

최은아 | 인권운동사랑방

2008년 5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타오른 촛불은 그해 내내 거리를 활보했다. 오랫동안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공권력의 물대포와 방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언행을 각오하고 오랫동안 촛불을 밝혔다.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반대의 목소리는 어느덧 비정규직 이슈와 교육, 의료 등의 민영화 반대 요구로 커져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도, 언론의 자유도, 집회·시위의 자유도,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권도 모두 불온하다고 단정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라며 주권자인 시민들을 탄압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의 주거권을 빼앗고,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물·에너지·의료 등과 같은 공공재를 민영화·사유화했다. 가진 자들에게는 친절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서는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앗아가려 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억압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권력에 맞서 싸웠다. 그 저항의 정신을 이어 촛불 투쟁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2008 인권선언>은 시작되었다.



말과 실천으로 쓰기

2008년은 유엔(UN)의 세계인권선언이 제정·선포된 지 60돌을 맞이하는 해이다. 누군가에게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은 그 한 번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겠지만, 2008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12월 10일은 우리가 쟁취해야 할 인권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2008년의 시대와 공간을 담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 제정 60돌을 계기로 인권활동가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권을 만들어보자고 뜻을 모으기 시작했다. 우리가 밟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말과 실천으로 만들어낼 인권선언을 상상하는 것은 뿌듯한 일이다.

어디서부터 물꼬를 터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중 이 사회에서 인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성소수자, 청소년, HIV/AIDS 감염인 등의 현실에 주목했다. 흔히 인권은 사람이 스스로 존엄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실현되지 않는다. 특히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성소수자, 청소년, HIV/AIDS 감염인 등의 경우 '보호'와 '배제'의 그늘에서 삶을 이어간다. 그런데 이들이 인권의 숨어 있던 경계를 허물며 '나에게 ○○ 인권이 있다'며 거리를 활보하고, 집회를 열며, 열띤 토론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즉 세상이 불러주지 않는 이름을 스스로 부르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그녀들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사람'임을 선언하면서, 자기 존엄과 자신감을 찾으려는 몸짓을 '탈레이 인권선언'으로 만들어갔다. 평소 주체로 나서지 못하던 사람들이 인권선언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흥분을 주는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탈레이 인권선언이 10월 5일 주거권 선언, 11월 21일 금융피해자 권리선언, 11월 30일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12월 1일 HIV/AIDS 감염인 인권선언, 12월 3일 장애인 인권선언, 12월 5일 성소수자 인권선언, 12월 6일 비정규직노동자 권리선언, 12월 10일 청소년 인권선언, 12월 14일 이주민 인권선언 등 열두가지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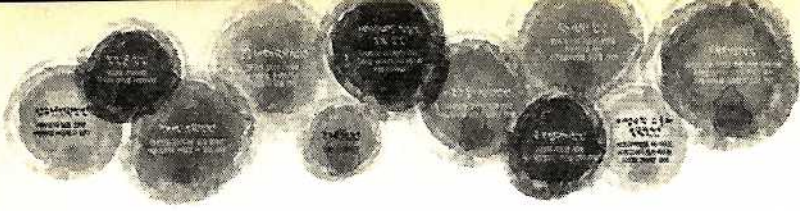
인권의 그물코 엮기

〈2008 인권선언〉을 만드는 과정은 집단적이며 아래로부터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11월 8일 인권선언 밑불때기 워크숍을 개최해, 인권선언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에 어떤 가치가 스며들어야 하는지에 관해 토론했다. 워크숍에서는 각 주체의 권리가 개별적인 것으로 같이지 않고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나'와 '너'의 권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인권 끝말잇기는 '가난한 사람들', '청소년', '이주민', '장애여성', '비정규직', '쫓겨난 네티즌' 등의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각자에게 인권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권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권리와 연결되어 보편의 언어로 탄생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다.

가령 비정규직노동자는 싸우다가 일터에서 해고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여성은 노동생산성의 논리만으로 노동할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다. 이 문제를 확장하여 일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보장되는 권리를 양쪽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소득에 관한 권리는 노동에 따른 기여가 없어도 장애 정도나 체류 자격에 따라 제한되지 않고 누구나 기본적으로 향유해야 할 권리임에 공감했다. 이렇듯 주체의 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작업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인권이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우리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서로 잡아주는 그물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2008 인권선언〉을 성안하기 위해 선언에 들어갈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모둠별로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일곱 가지씩 정한 다음 그 중 2008년 현시점에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세 가지를 선택해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자발성, 민주, 평화, 생태적 깨달음, 지속가능성, 해방, 교류와 소통, 공감, 다양성, 평등, 자유, 사회공공성, 주체성 등의 가치에 공감을 느꼈다. 특히 2008년 인권선언에 꼭 필요한 가치로 '저항', '연대'가 꼽아졌고, 이러한 가치들은 바로 '쫓겨난 투쟁과 맥이 닿




아 있었다.

이어 2008년 11월 19일 '2008 인권선언 포럼'을 개최해 본격적인 인권선언 성안 작업에 들어갔다. 성안 작업은 인권활동가가 초안을 작성하고, 포럼에 참석한 청소년·성소수자·장애인·비정규직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덧붙이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08 인권선언>은 일반인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모인 '불씨'들이 쓴 인권선언을 참조해 성안되었다.

초안을 작성한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2008 인권선언〉은 전문에 촛불 저항이라는 시대정신과 비정규직·빈곤 확산이 부르는 생존권의 후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2008 인권선언〉의 열개는 이렇게 짜였다. 먼저 1부에서 <2008 인권선언〉의 원리이자 기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성, 평등, 평화, 연대, 저항을 서술하고, 2부에서는 2008년 가장 절실한 권리로 의견이 모인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주요하게 위치 지우며 사회권과 자유권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3부에는 연대의 권리와 저항권을 포함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2008 인권선언〉이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 이를 매개로 함께 해방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가르치는 연대를 기획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다짐했다.

불씨로 말 걸기

릴레이 인권선언과 함께 준비한 것은 <2008 인권선언〉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불씨'를 모으는 일이었다. 불씨로 자원한 사람들은 인권선언을 만들고 사회적인 고통에 연대하는 의미로 자신에게나 이 사회에 필요한 권리를 쓰고 5000원 이상을 후원하도록 했다. 불씨 선언을 모으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으로 '말 걸기'를 시도해보려는 기획이었다. 불씨 모으기를 통해 <2008 인권선언〉 운동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하고, 불씨들이 쓴 선언을 참고로 하여 선언문의 기초를 마련했다.

3개월 동안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집회, 회의, 교육 공간에서 불씨를 모았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당신에게 필요한 인권을 써"보도록 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애초 2008명의 불씨를 모으려고 했던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1300여 명에 이르는 불씨를 모을 수 있었다. 초반에는 관련 소모임이나 활동에 공감하던 주변인 중심으로 운동의 취지를 차근차근 설명한 후 불씨를 모아 '불씨가 쓰는 인권선언'의 내용이 비교적 더 풍부했고, 후반부에 집회 현장에서 받은 불씨 선언들은 '비정규직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와 같은 구호가 주를 이루거나 <2008 인권선언〉 취지에 공감하는 연명 정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저항을 이끌어내기 위해

<2008 인권선언〉 운동을 하는 내내, 이러한 인권선언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고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냐 하는 질문을 받았다. 그럴




때마다 인권선언 운동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답은 간단했다. 억압받는 자의 위치에서 인권은 그 자체가 자신이 겪고 있는 억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억압받는 자는 이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선포한다는 것은 비록 현실에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더라도, 자신이 존엄하다는 믿음과 인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저항의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다. HIV/AIDS 감염인 인권선언에 참여한 윤 가브리엘 씨는 “인권을 선포하는 목소리는 우리를 향한 다짐”이라며 “더 많이 싸워야겠구나 하는 결심을 했다”고 말한다. 장애인 인권선언을 준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들은 12월 2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집회를 하고 여의도 국회 앞까지 행진하려 했지만 경찰의 방해로 국회에는 밤 9시에 나 도착할 수 있었고, 12월 3일 장애인 인권선언 낭독 후 국가인권위원회까지의 행진도 순탄하지 못했다. 역설적이게도 인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말한다든 것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꺾박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2008 인권선언>은 인권이 저항과 연대의 언어라는 것을 몸과 마음에 기억하도록 하는 일이었다.

릴레이 인권선언, 상상력이 싹트다

또한 <2008 인권선언> 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릴레이 인권선언과



<2008 인권선언>은 ‘인권 개념’을 다양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촉진했다. 특히 청소년 인권선언, 성소수자 인권선언,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에서는 국제인권규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창의와 상상이 엿보인다.

또한 <2008 인권선언>에서는 노동에 따른 기여와 무관하게 사회적 인 기본소득을 권리로 인정하고 성적 권리와 개인간 결합 권리를 명문화하는 등의 성과들이 눈에 띄었다. 그동안 권리가 되지 못한 것들이 권리의 범주로 들어오기까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활동가는 “집회를 위한 학생인권선언문은 몇 번 만들어봤지만, 청소년 인권 전반을 다루는 선언은 만들지 못했다. 유엔(UN) 「아동권리협약」이나 「한국 청소년 헌장」으로는 성이 안차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발전해온 청소년 인권의 다양한 분야들과 국민을 청소년 인권선언에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2008 인권선언> 운동은 당장 운동의 의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각각의 운동 진영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의 과제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이영 사무국장은 “이주민 인권선언을 준비하면서 이주민이 겪고 있는 이슈를 권리로 정리한 것이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릴레이 인권선언에서 ‘지금 여기!’의 구체적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 인권 목록에 ‘○○ 권리’를 끼워 넣는



식이 아니라 인권을 새롭게 재구성하려고 노력한 고민도 엿볼 수 있다. 가령, 장애인 인권선언은 1조에서 장애라는 개념을 '개인의 장애와 사회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변화하는 개념'으로 설정하면서 '장애가 사회적 억압의 결과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과거 장애를 개인의 무능력으로 보던 시각을 넘어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사회적인 장벽을 인권 실현의 장애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등한 자들이 모인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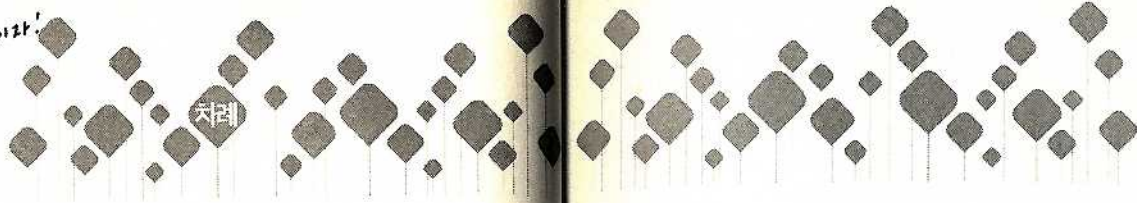
불씨들의 후원에 힘입어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2008년 12월 10일은 포근한 날씨였다. 오후2시부터 청계광장에서 <2008 인권선언> 선포식을 갖고 오후7시부터 인권문화제를 개최했다. 촛불의 저항에 놀란 이명박 정권은 경찰력을 앞세워 삼삼오오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잡이들일 듯한 분위기였다. 촛불의 진원지인 청계광장에 인권선언을 하러 사람이 모이자 당연한 순서로 경찰이 배치되어 자못 긴장감이 감돌았다. 릴레이 인권선언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불씨 모양의 고깔 모자를 쓴 인권활동가들이 오가는 시민들에게 <2008 인권선언>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HIV/AIDS 감염인 페이스 인권선언을 모두 모은 걸 개그림이 전시되고 자전거 발전기를 통해 인권선언 불씨 전등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인권문화제는 시작되었다. 12월 10일 오늘날만큼 청계광장이 인권으로 넘치는 것 같았다. 인권문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나이가



다른, 자신의 성정체성이 무엇이든, 같은 성(性)을 좋아하든 다른 성을 좋아하든, 한국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인간을 형성하는 차이가 서로를 가르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서 다양성이라는 숲이 되어 평등한 자들의 축제를 만들려고 했다. 인권문화제의 마지막 순서는 <2008 인권선언>을 성우 주자영 씨가 낭독하는 것이었다. 조항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인권문화제에 참석한 사람들도 함께 따라 읽어내었다. 차가운 밤공기 속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인권선언을 만들어가면서 경험한 자유와 평등의 기억은 앞으로 인권운동을 해나가는 데 의미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2008 인권선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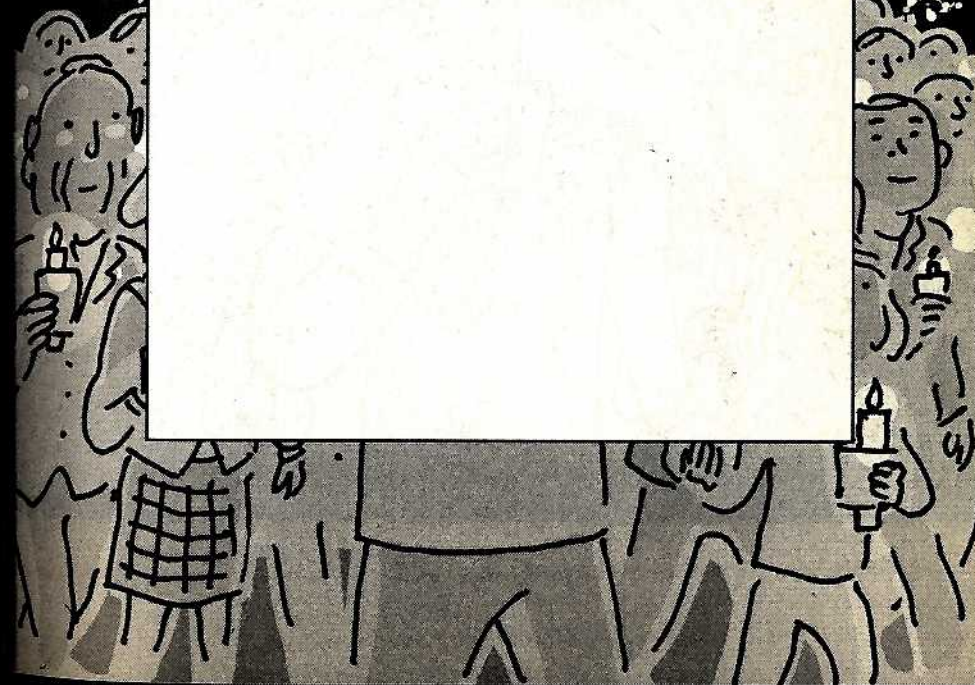


차례

머리말	
• 2008 인권선언, 평등한 자들이 만드는 잔치 _ 최은아	4
2008 인권선언	
2008 인권선언 -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19
• 21세기에 맞는 인권선언이 필요하다 _ 명숙	47
릴레이 인권선언	
2008 주거권 선언	57
• 살 만한 집에 살 권리 _ 재영	60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63
• 빈곤에 갇힌 권리를 석방하라 _ 조승화	67
빛 없는 세상을 향한 금융피해자 권리선언	71
• 신용불량자가 아닌 금융피해자로 서다 _ 이해경	75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79
From Economic Tools to Human Beings	83
• 이주노동자 권리선언, 구색 맞추기 혹은 저항하기	
_ 이주인권연대 활동가들	87
2008 HIV/AIDS 감염인 인권선언	91
• 행동을 이끈 언어 _ 윤미	94

2008 장애인 인권선언	99
• 시혜와 차별을 넘어 평등과 인권으로 _ 배용호	105
2008 성소수자 인권선언	111
• 성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하자 _ 오가람	115
비정규직노동자 권리선언	121
• 하늘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노동권 현실은 어떨까? _ 손장일	124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129
• “헌법 21조를 지켜내자” _ 장여경	135
2008 청소년인권선언	141
• 욕심으로 가득 찬 청소년인권선언 _ 공현	153
환자 권리선언	157
• 환자, 권리를 말하다 _ 김경애	161
이주민 인권선언	165
• 이주민 권리는 곧 인권이다! _ 이경숙	168
불씨 선언	172
부록 • 영상 DVD <2008 인권선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2008 인권선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사람은 사람인 이유만으로도 존엄하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생명도 존엄하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자본주의는 자연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정복해왔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생존 자체도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다.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은 개발독재와 천박한 자본주의 이윤중심 성장논리 속에서 짓밟혀왔다. 우리는 인권이 부정되고 짓밟히는 억압적인 정치와 사회구조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조금씩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왔다.

또한 자본주의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 비장애중심주의, 나이주의, 이성애중심주의, 인종주의 등 정상성의 잣대는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성적 지향 등의 차이를 생산하여 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서 열화하고, 분리하며 권리를 빼앗았다.

모든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를 누리는데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더욱 많았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인간의 자유'가 아닌 '시장의 자유'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하

게 만들었다. 이제는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재와 인권 보장 체계마저 시장에 맡겨놓고 다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하는 일은 인간 존엄에 대한 외면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도록 만드는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 존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또한 정치권력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국의 추악한 전쟁에 파병하여 인류 평화를 파괴하고 개인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2008년 봄부터 가을까지 타올랐던 촛불의 직접행동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었음을 깨달은 저항과 연대의 상징이며,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권력에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인권은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도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민중들은 대의제 권력에 잡혀버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자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외침은 또 다른 외침을 낳는다! 우리의 저항은 참여한 우리 모두를 성장시켰고 우리의 요구도 확장시켰다. 식량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촛불의 요구는 '의료 민영화 반대' 등 공공성 확보의 외침으로 이어졌으며 '빈곤을 재생산'하는 비정규직 철폐로 이어가지 않았는가.

하지만 국가권력은 우리의 이러한 외침과 행동을 잠재우고자 온갖 폭력을 저질렀다. 정부는 집회현장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의 터전에서 정치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시를 강화하고 연행하고, 구속하는 공포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민주주의와 인

권 투쟁의 성과를 한순간에 되돌리고, 파괴하고, 억누르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연대하고 저항할 것이다. 역사는 인권을 무시하는 권력이 인간사회와 자연생태계를 불행에 빠뜨리는 원인임을 말해준다. 우리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넘어서기 위해서, 인권과 평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추구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년이 되는 지금, 우리는 권리선언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등의 국가와 기업의 행위들을 매 순간 비교하여 사회가 결코 폭정에 의해 억압받고 타락하도록 스스로를 내버려두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08 인권선언>에 참가한 우리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전 세계의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의무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달성해야 할 사회의 방향과 인권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I.

1조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1 평등한 인권의 보장은 기회의 평등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결과의 평등으로 드러나야 한다.

2조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2-1 보편적인 인간 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억압에 저항하고 서로 연대할 때, 사회는 만인의 인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질서로 나아갈 것이다.

II.

3조 모든 사람은 사회성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

3-1 누구나 차별 없이 기초생활, 의료, 교육, 문화, 노동 등의 사회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사회는 이에 필요한 제도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3-2 모든 사람은 노동 유무, 나이, 성, 장애에 상관없이 사회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규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3-3 모든 사람은 기본 생활 보장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인 조세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누구나 조세 관련 제도와 법률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조세의 용도를 지켜보고 그 세액, 기준, 징수기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3-4 모든 사람은 빈곤에 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빈곤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막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박탈하므로 그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 및 국제사회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조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적절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아야 하며,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협상 및 행동할 권리가 있다.

4-1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생산성의 잣대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나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을 거부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할 권리가 있다.

4-2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4-3 모든 사람은 실업으로 인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4 모든 사람은 사회적 활동 및 문화생활, 여가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는 짧은 노동시간과 적절한 휴식, 정기적 유급휴가, 생리휴가 및 출산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

4-5 모든 사람은 작업장 감시,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등의 작업환경이 아닌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4-6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협상·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한 파업권 행사는 정당하며 공익사업장,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파업을 비롯한 단체행동을 제한하거나 물리적 힘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4-7 모든 사람은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4-8 모든 사람은 비정규직노동자가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4-9 여성, 장애인, 이주자, 성소수자, 청소년이라는 등의 이유로 노동에 대한 권리가 부정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5조 모든 사람은 살 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5-1 모든 사람은 개인의 안식과 건강, 사생활의 보장을 위해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임대료 및 주택구입비 등의 경제적 이유나 장애, 여성, 성소수자라는 사회적 차별 등의 이유와 상관없이 주거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또 국가는 쪽방이나 반지하 등 적절한 주거의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5-2 모든 사람은 살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개발로 인한 강제 퇴거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쫓겨나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는 관련 법을 개정하고 개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해야 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집값, 인간관계, 지역 물가 등의 생활 가치도 반영하여 보상해야 한다.

5-3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장애, 성별, 나이, 경제력,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 살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가 있으므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구금되어 생활하는 등 자립적인 생활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나이, 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주거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5-4 모든 사람은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임대주택과 사회주택제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주거에 대한 불안으로 주택 마련에 종속된 삶을 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주거의 점유성과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투기 등을 규제해야 한다.

6조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윤보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제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6-1 누구나 적절한 예방적·치료적 의료서비스와 위생 및 영양 등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무상의료 등의 보건의료체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6-2 모든 사람은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개인 신체 정보를 남용하는 임상실험 등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6-3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접근권이 있다. 재산, 질병, 장애, 나이, 성별, 지역 등의 의료이용을 막는 경제적·물리적 장벽과 사회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

6-4 모든 사람은 예방·치료의 전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보호받을 권리와 의료적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7-1 누구나 장애, 경제력, 나이, 능력, 이주 등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무상교육·장애 특수 교사 확충·입시제도 폐지는 교육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7-2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과 재능을 발전시키고 지역적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인격의 향상에 반하는 입시교육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7-3 누구나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다양한 교육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 교과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반영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선택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7-4 누구나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강화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국가와 사회는 보장해야 한다.

8조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8-1 누구나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사형제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8-2 누구나 명예롭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불필요한 의학적 실험으로 존엄한 삶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명이 존중되듯이 존중받을 수 있는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8-3 자연을 비롯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10조 모든 사람은 모욕이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0-1 누구든지 국가, 기업, 가정, 직장, 학교 등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이유로도 모욕적인 처우나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11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1-1 모든 사람은 경제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존 및 생활에 필요한 식량권이 있으며, 식량권은 어떠한 사회질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누구든지 식량권을 침해하는 국가 및 국제 질서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1-2 누구나 건강을 위협하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식량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식량권은 생명권과 직결된 권리이므로 기업의 이익이나 국익이라는 등의 이유로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11-3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1-4 누구나 자기가 먹을 식량을 생산하고 그에 의존해서 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농어민들의 식량 생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내적 제도와 국제적 무역 질서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1-5 장애인 등은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2조 누구나 필요한 물, 에너지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생태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2-1 누구든지 물에 대한 권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제한받아서 안 된다. 물은 공공재이므로 기업 등 사적인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 민영화와 기업의 무분별한 생수 개발은 제한되어야 한다.

12-2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12-3 모든 사람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개발과 성장 위주의 산업 및 사회구조 정책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12-4 모든 사람은 후세대의 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에너지 이용을 절제하며, 재생가능하고 생태적인 에너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다.

13조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누구나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13-1 모든 사람은 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13-2 환경에 대한 권리는 후세대의 권리인 동시에 자연의 권리이므로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13-3 누구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의무와 공존할 권리가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1 모든 사람은 재산, 성별, 장애, 병력, 나이, 국가, 민족, 지역, 인종, 피부색,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학력(學歷), 학습능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4-2 누구든지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 차별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더라도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간접 차별, 그 밖에도 위에 열거한 사유로 인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14-3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4-4 반(反)차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누구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15조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의 및 국민소환 등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15-1 모든 사람은 보통·비밀·직접의 평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누구나 평등하게 공무를 담당할 권리와 피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국적이나 성별, 재산의 유무 등에 상관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 또한 누구나 국가의 결정을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국가는 모든 결정과 결정 과정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15-2 가부장적 질서와 문화로 인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이 제한되거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비례대표 및 여성할당제 등을 완전 의무화해야 한다.

15-3 장애인의 정치참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시 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도록 투표소, 선거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장애인의 비례대표 등을 현실

화해야 한다.

15-4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장벽은 없어야 한다. 선거권의 나이 제한을 낮추고, 학내외에서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15-5 피선거권이 경제력에 의해 제한받어서는 안 된다. 선거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사회가 마련하여 경제적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15-6 모든 사람은 법안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위임받은 대표자나 개인들의 연대로 법률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국민투표와 국민발의를 할 권리가 있으며, 민중이 뽑은 대표가 민의에 반할 경우 소환할 권리가 있으며 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모두 해당된다.

15-7 모든 사람이 선거권 행사만이 아닌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민중의 의사가 통치 권력의 기초이므로 대의제 정치가 민중의 의사에 반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직접 정치할 권리가 있다.

15-8 모든 사람은 공식적인 통치 기구 외에 준(準)사적인 기구나 공의적인 기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16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가 있다.

16-1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생각하고 사상과 이념을 지향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귀중한 권리이다. 어떠한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 안 된다.

16-2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인간

내면에 대한 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내면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16-3 사상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로운 전달과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내면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에 비판할 수 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17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자유롭게 표현 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아서 안 된다.

17-1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인쇄물·방송·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직접 표현하고 배포할 권리가 있다. 소수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대중매체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17-2 모든 사람은 국가의 간섭이나 검열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부나 기업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압박받거나 처벌받아서 안 되며, 사회는 처벌에 대한 위협으로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17-3 모든 사람은 다양한 정보와 사상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와 사상을 만들고 전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저작권을 이유로 공정한 정보의 이용을 제한받아서 안 되며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국가는 자신에 대한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와 사상의 유통을 정치적 차이나 경제력 유무 등과 상관없

이 보장해야 하며, 상업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17-4 누구든지 재산, 지역, 나이,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미디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사회는 미디어 독점 구조 속에서 배제돼 온 소수자들의 자기표현 기회를 공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17-5 장애인은 언어, 수화, 점자 등 자신의 장애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의사소통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안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은 음성파일, 화면해설 등 의사소통 매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7-6 모든 사람은 언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매체의 규모나 형식 등을 이유로 제한받아서 안 된다.

18조 모든 사람은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8-1 누구든지 정치나 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위력을 보이기 위한 집회시위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민주주의를 풍부하게 하므로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18-2 누구든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 안 된다. 또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관련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18-3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임을 구성하거나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결사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또, 누구든지 결사에 소속할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8-4 장애인은 집회시위와 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활동보조인과 분리되거나, 보조기구 및 보조견 등을 빼앗기거나 이용을 제한받아서 안 된다.

1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19-1 모든 사람의 신체는 자유롭게 존중받아야 하며 위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위법행위 등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폭력, 가정폭력, 학교체벌, 시설 폭력 등을 당해서는 안 된다. 사회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사생활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

19-2 누구든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 등을 법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체포, 구금, 구속, 심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여야 한다.

19-3 모든 사람은 장애, 나이, 경제력,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격리,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등의 시설에서 격리 및 이동권 제한 등이 없도록 시설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

19-4 장애인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가지며, 교통수단에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9-5 복장 및 두발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학생 등의 신분 또는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19-6 이동의 자유와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는 국적에 상관없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있으며, 체포와 격리 등을 야기하는 단속·추방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예측 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1 모든 사람은 인간의 개체적 독립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노예 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2 누구든지 현존하는 모든 예측을 바꿀 권리와 의무가 있다.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시설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예측, 고용허가제에 의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예측,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여성에 대한 예측,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업주에 대한 예측 상태,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의한 청소년과 여성의 예측 상태 등은 사라져야 한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1 누구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체, 가정 및 주거, 노동, 통신 등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의 노출로 인해 비난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단,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사생활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묵인해서는 안 된다.

21-2 모든 사람은 도·감청, 위치 확인, 감시 카메라 등 다른 사람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국가나 기업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시받지 않을 권리와 원치 않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1-3 누구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전달 등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나 기업 등은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으며,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 기록, 건강 상태 및 성생활 등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는 법률적 근거 없이 수집할 수 없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그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2-1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그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아야 한다.

22-2 모든 사람은 정치적 성향, 출생국가, 경제력 등의 이유로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3 누구든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망명할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간 결합을 이룰 자유와 이루지 않을 자유가 있다.

23-1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들의 유대와 결합을 형성할 자유

가 있다. 혈연에 기반한 가족만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가족을 포함한 개인간 결합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23-2 모든 사람은 어떠한 형태나 방식으로도 가족 등의 개인 결합을 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동성애나 비혼공동체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성애에 기반한 가족 구성권만을 보장하거나 혈연에 의한 가족만을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다.

23-3 모든 사람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출산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재산, 장애, 나이, 성소수자, 결혼 유무 등의 이유로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 양육이라는 규범으로 이 권리를 침해하거나, 여성에게만 양육의 책임을 부과해서도 안 된다.

23-4 장애인은 자립생활의 권리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가족 또는 결합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24조 모든 사람은 법의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 집행은 공평해야 한다.

24-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떤 차별로부터도, 또한 그러한 차별을 부추기는 어떤 행위로부터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4-2 누구든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내 법원으로부터 유

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4-3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또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4-4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24-5 장애인, 외국인 등은 행정·사법절차에서 보호자, 수화통역, 통역, 진술보조인 등 의사소통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4-6 성폭력 피해생존자는 자신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장애인 등의 경우 녹화진술 등 피해생존자의 처지에 맞는 법적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5조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25-1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으며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전쟁이나 개발정책, 군사기지 확장 등으로 평화로운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25-2 누구든지 평화로운 삶을 가로막는 전쟁을 거부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25-3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는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강제징집으로 인한 양심의 훼손,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양

심적 병역 거부권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26조 모든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26-1 누구나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문화적 향유나 창작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26-2 모든 사람은 다양한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권리가 시장의 논리, 기업에 의한 문화사유화와 상업화로 침해되거나 시민들의 창작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획일화된 소비문화만을 공급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6-3 장애인은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27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27-1 과학의 진보에 대한 혜택은 개발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한다. 누구든지 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사유화하여 이윤화하는 지적 재산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27-2 의료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 존엄성의 기본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모든 과학의 진보가 정당하지는 않으므로 모든 사람은 인권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연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III.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8-1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연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8-2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승인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와 기업 등 제3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위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28-3 선언에 제시된 권리를 어떤 나라나 집단 또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데 이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의 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선동하는 행위도 그러한 의미에서 안 된다.

29조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29-1 인권이 침탈되는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지속적인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든 사람의 저항이야말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권리 중 가장 정당한 권리이며, 가장 고귀한 의무이다.

29-2 누구나 인권의 실현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새로운 사회질서와 국제질서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 2008 인권선언 추진위원회와 불씨들이
2008년 12월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선언하다.

2008 인권선언 (요약문)

I.

1조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2조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II.

3조 모든 사람은 사회성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

4조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적절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아야 하며,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협상 및 행동할 권리가 있다.

5조 모든 사람은 살 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6조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윤보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제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8조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10조 모든 사람은 모욕이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1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2조 누구나 필요한 물, 에너지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생태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3조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누구나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조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의 및 국민소환 등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16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가 있다.

17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자유롭게 표현 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아서 안 된다.

18조 모든 사람은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그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간 결합을 이룰 자유와 이루지 않을 자유가 있다.

24조 모든 사람은 법의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 집행은 공평해야 한다.

25조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27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III.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9조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21세기에 맞는 인권선언이 필요하다

명숙 | 인권운동사랑방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하다.

2008년은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생명이다. 폭력과 전쟁에 대한 혐오와 반성 속에서 평화에 대한 염원이 만들어낸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합의였던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가 양존하는 현실에서 체제의 문제를 직접 건드리지 않으며 최소한의 '인간 존엄과 생존' 문제를 담아내는 선언이었다. 그렇다 보니 선언의 많은 부분을 자유권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또한 세계인권선언이 근대적 인권관에 맞닿아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의 태동과 함께 자유주의적 인권관은 성장해왔다. 자본주의적 인간, 즉 신분적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노동자와 자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생명, 신체, 재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했다. '신체의 자유'와 '재산의 자유'는 절대 불가침의 권리였고 이는 프랑스혁명의 선언에도 나타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진 자들의 선언에 맞선 민중의 선언이나 여성의 선언도 있었다. 선언 운동의 과정이 바로 이데올로기 투쟁의 과정이었다.

시간과 공간, 사람들의 관계, 사회적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선언이나 말과 행동은 없다. 그래서 선언은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 인식을 담은 것이자, 새로운 사회에 대한 모색뿐 아니라 이데올로기 투쟁이 일어나는 격론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2008 인권선언>은 세계인권선언을 단지 기념하는 일 이 아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촛불로 타올랐던 민중들의 저항을 담은 그 룻이자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투쟁의 결과이다. 또한 짧은 시 간이지만 선언을 만들면서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 토론한 결과물 이다.

현실의 고통이 반영된 인권선언

<2008 인권선언>의 구조는 세계인권선언의 구조와 다르다. 세계인 권선언이 신체의 자유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유권 중심의 구조를 취 하는 반면, 2008인권선언은 사회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흔히 사 회권이라 약칭한다)이 우선으로 들어간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를 택한 이유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속에서 '자 유'가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세계인 권선언 제정 당시 사회권의 비중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진영과 사 회주의 진영 간의 핵심 논쟁이기도 했던 부분이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단지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먹을 것, 살 곳, 배우고 알아야 할 것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

권은 종이 위의 문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사회권은 빈부 격차가 심화하고 모든 삶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신자유주의 정책 경향 속에서 더 강조해야 할 때이다.

재산권은 인권이 아니야

<2008 인권선언>에서는 재산권을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권'자만 붙으면 마치 인권인 양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인권선언 17조가 재산권에 대한 무한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 다. 물론 인권 관련 학자들의 일부는 세계인권선언의 17조는 재산권을 명문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명시화하지 않았 기에 이 부분은 여전히 논쟁의 영역이 되고 있다. 이에 <2008 인권선언> 은 재산권은 인권이 아니며 인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족주의, 보호주의를 넘어

1948년 인권선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중 하나는 그것 이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상정하고 있으며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 호 담론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성애에 기반한 가족주의는 '개인 간 결합'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담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가족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이 노동력 재생산의 하부 단위로서 기능하도록 작동한다. 그런 면에서 <2008 인권선언>은 가족 구성의 권리를 "23조 모 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간 결합을 이를 자유와 이루지 않을 자유

가 있다'로 수정하였다.

1948년 인권선언의 보호주의 담론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 '보호'라는 이름의 또 다른 굴레를 만들어버렸다. 인권을 담지한 독립적 주체가기보다는 인권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호받기만' 하면 되는 존재라는 굴레를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 인권선언에서는 여성, 아동, 장애, 이주민,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소수자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다시 적어갔다. 구체적인 권리 명시가 구체적인 권리를 찾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성적 권리 독자화

이성에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비판 의식이 없는 1948년 인권선언은 성적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공·사 이분법의 논리이기도 하며 성적 권리를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일 수 있다. 인권은 공적 영역에 간혀 있고, 어떤 사적 폭력과 인권 침해가 있어도 '사적 영역'이기에 눈감아도 된다는 공·사 이분 논리가 '가정폭력, 성폭력'을 강화시켜왔다. 이성애가 아닌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은 권리로서 드러내지도 못하는 현실이다.

엄격히 차별과 인권침해가 존재하는 현실이기에 <2008 인권선언>에서는 성적 권리를 독자적인 항목으로 구체화하였다. 2007년에 시도되었던 차별금지법조차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동성애자들을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적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이는 "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

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로 명시하였다.

소수자의 시선을 담아

<2008 인권선언>은 소수자들의 시선으로 써내려가려고 노력했다. 물론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반차별권을 본격적인 권리로 14조에 담았으며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각각 구체적인 항으로 포함했다. 이러한 소수자의 시선은 노동권에도 역시 그 항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활동보조인, 저상 버스와 낮은 도로 턱)이 없는 한 박탈이자 차별임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1948년 인권선언의 '국적을 가질 권리(15조)'는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를 갖거나 자유로울 권리로 수정하여 22조에 담았다("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그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국적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세계질서에 대한 상상과 밑그림이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권리를 박탈당하는 현실도 반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국적자여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어보고, 국적 외의 세계시민공동체 등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지는 의미에서 '국적을 포함한'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자유로울' 권리라고 적었다.

노동에 대한 상상과 한계

‘시대를 뛰어넘는 시대 인식’을 갖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보니 ‘노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자본주의적 노동’, 다시 말해 이윤을 낳는(교환가치가 있는) 추상적 노동만을 노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노동 개념을 깨뜨리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노동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노동 개념을 깨뜨리는 데는 노동 개념 자체를 확장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노동이 아닌 다른 가치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다. 따라서 노동 개념을 원천적으로 재정의하지는 않기로 했다.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노동에 중요 가치를 두는 것은 한계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가령 자본주의적 노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의 노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문제의식이 있다. 일하고 싶은 장애인에게서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일할 권리는 그대로 명시하기로 하였다. 대신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을 할 권리’와 ‘노동을 거부할 권리’를 포함시켰다. 노동이 자본주의적 노동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둔 셈이다. 내용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생산성의 잣대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나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을 거부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할 권리가 있다”로 하였다(4-1항).

또한 노동권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노동권을 명시한 하나의 독립된 조항을 만들었다. 노동권을 노동자의 권리로만 보거나 노동조합의 권리로만 보는 현재의 시각을 벗어나자는 생각에서 주어를 ‘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권리인 노동3권(단체결성권, 단체협상권, 단체행동권)이 천박한 자본주의가 중심이 된 한국에서 불온시되며 불법시되고 있다. 그래서 4조에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명시하였다. 권리를 분명히 하는 교육의 효과를 의도한 것이기는 하지만 물론 한계는 있다. 노동단체가 꼭 노동조합만을 의미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행동권이 제한받아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노동3권이 우리 모두의 권리로 인정되길 바란다.

미래로 열린 선언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9조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2008 인권선언은 2008년의 문제 인식을 담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밟고 있는 현실이 달라지고 그 현실을 사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진보하면 선언은 재구성될 수 있다. 굳은 콘크리트가 아닌 변화하고 흐르는 것이 인권이듯이 말이다.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권리를 제한해서도 안 될 것이다. <2008 인권선언>이라는 이름은 이러한 고민을 담고 이어졌다. 이번 인권선언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권리는 저항권과 연대권이다.

저항권과 연대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 함께 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없을 테니까. 권리의자 의무인 이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저항과 연대의 광장에서 함께 만나기를, 이 선언은 기대한다.

릴레이 인권선언

2008 주거권 선언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빛 없는 세상을 향한 금융피해자 권리선언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2008 HIV/AIDS 감염인 인권선언

2008 장애인 인권선언

2008 성소수자 인권선언

비정규직노동자 권리선언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2008 청소년인권선언

환자 권리선언

이주민 인권선언

* 릴레이 인권선언은 날짜순으로 엮었습니다.

2008 주거권 선언 “집은 인권이다”

우리는 언제쯤 살 만한 집에 살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살 만한 집이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집만 허용되고 있다.

주거권은 집을 투자 상품으로 만드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더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건설 자본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준비하고 가진 자들을 위해 세금을 줄여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 집에서 내쫓기고 개발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있다. 개발의 이익은 건설사와 정부 관료와 지역의 토호세력들에게로 돌아갔고 이들은 끊임없이 더욱 많은 개발을 부르짖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떠들지만 각종 부동산정책으로 경제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빼앗길 것조차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그동안 삶의 자리를 빼앗긴 철거민들, 몸을 누일 따뜻한 방 한 칸이 필요했던 노숙인들, 주소지도 없이 화재에 노출돼 위태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비닐하우스 주민들, 시설로만 몰아넣는 사회에 집을 요구하기 시작한 장애인들은 주거권을 외쳐왔다. 이제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 만한 집에 살 권리를 외칠 것이다. 집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되도록 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던 땅이나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을 때까지 살 권리가 있다. 누구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다.



구할 것이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들고 주거권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발 한발 전진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살 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밝히는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던 땅이나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을 때 까지 살 권리가 있다. 누구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다.
2. 모든 사람은 적정 수준의 주거비 부담으로 살 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각자의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이 주거비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적당한 수준의 집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을 해치지 않을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살 만한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수에 적합한 넓이여야 하며, 부엌, 화장실, 온수시설 등 필수시설이 있어야 한다. 전기, 물, 도시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난방비가 너무 비싸지 않아야 한다.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해야 하며 너무 습하거나 건조하지 않도록 지어져야 한다. 매연이나 먼지, 소음 등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행정이나 사회복지를 이유로 거주자의 동의 없이 거주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5. 모든 사람은 각종 시설들을 이용하기에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대중교통의 이용이 자유로워야 하며 자신

이 일하는 곳과 동떨어진 곳에서 살 것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학교, 병원, 은행,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6. 임대아파트나 비닐하우스촌, 쪽방 등에 산다는 이유로, 혹은 집이 없어 거리에서 잔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적, 인종, 성별, 장애, 나이,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집을 구하거나 집에서 살아가는 데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살 만한 집에 살 권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권리이기도 하다. 집을 짓는다는 이유로 자연을 파괴하는 마구잡이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8.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및 주택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위에서 밝힌 권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살 만한 집에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 정부에 저항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 권리를 빼앗는 현실에 저항하며 싸우는 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믿는다. 또한 살 만한 집에 살 권리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다른 권리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우리에게 인권이 실현되는 질서를 가질 권리가 있다.

*2008년 10월 5일 주거의 날 기획단이 서울역 광장에서 선언하다.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재영 | 인권운동사랑방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던 해 대한민국에서 주거권은 국민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권리였다. 한국에서 주거권은 전쟁의 혼란과 개발독재 시대를 지나며 집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건설 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자리 잡았다. 50년이 지난 2008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와 야만의 시대에서 '집'은 투기의 수단이자 재산의 증표로 자리 잡았다. 누구나 살 만한 집에 살 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 그 '누구'는 상위 1%의 사람들만 의미할 뿐이다.

그동안 삶의 자리를 빼앗긴 철거민, 몸을 누일 따뜻한 방 한 칸이 필요했던 노숙인, 주민등록도 되지 않은 곳에서 화재에 노출돼 위태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비닐하우스 주민, 시설로만 몰아넣는 사회에 '집'을 요구하기 시작한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주거권을 외쳐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주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책들은 인간이 아닌 이윤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개발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권이 박탈당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개발규제를 완화하고 뉴타운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개발의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유엔(UN)은 1985년부터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했다. 주거권을 침해받는 모든 당사자가 살 만한 집에 살 권리를 주장하며, 국가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날이다. 개발 드라이브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2008년 주거의 날에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과 인권을 빼앗아가는 건설 자본과 토호세력, 관료, 정부의 공공한 연대를 깨뜨리고 진정한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주거권 선언은 오늘날 부동산과 주거 관련 정책들이 민중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며 이것이 '인권'의 문제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주거권 선언은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모든 사람은 살 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으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2008 주거권 선언을 준비하는 워크숍에서 다양한 당사자들이 주거권의 요구들을 내놓으며 사람답게 살기 위한 '집'을 이야기했다. 중증장애인을 더 이상 시설에 가둘 수 없고, 쪽방에 사는 사람을 더 이상 불안정한 삶으로 내몰 수 없음을 공유했다. 집의 크기와 가격에 따라 사회적으로 계급이 형성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개발 구역에 사는 사람이 함부로 쫓겨나서도 안 된다는 것에 마음을 모았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집은 일부가 독점하는 재산이 아니다!”

“살던 사람도 쫓아내는 개발을 당장 중단하라!”

“집이 권력이 되는 사회는 정말 싫습니다.”

“시설은 감옥입니다. 시설이 아닌 진정한 자립생활권을 보장

하십시오”

이러한 각각의 요구들은 특정한 집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문제다. 누구나 이러한 걱정을 안고 살고 있으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다수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다양한 주거권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속에서 이등바등 살아가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직접 주거권 선언에 동참을 하기도 했고, 집에 대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선언은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나서서 권리를 강화하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주거권 선언만으로 우리가 제기했던 내용과 요구가 관철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연대 단체가 함께 모여 각 단위의 요구와 의제를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주거권 운동의 전망을 밝힌 의미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주거권 선언 이후, 더욱 본격적으로 다양한 주거권의 요구가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각각의 위치에서 주거권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건설 자본에게만이 아니라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옥주에게, 개발을 담당하는 조합에게, 구청과 지자체에게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빼앗는 현실에 저항하며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다른 권리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과 연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인권이 실현되는 질서 속에서 누구나 살 만한 집에 살 권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시혜가 아니라 권리를”

우리는 지금 절망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저녁 끼니를 걱정하고 오늘 나간 일터에서 내일 일자리를 걱정한다. 교육, 의료, 주거 등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저당 잡고 있다.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은 가난한 우리들에게 삶의 상한선이 되어버렸고 그 이상을 꿈꾸는 것은 거부당해왔다.

누가이토록 우리의 삶을 베풀 끝으로 내모는가. 우리는 가난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 우리는 더욱 깊어지는 빈곤과 불평등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것에 충실한 정권이 빚어낸 결과임을 안다.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비정규직을, 주거빈곤층에게는 개발을 핑계로 한 강제 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가 폭등과 공공요금 인상을 선물하는 저들은 가진 자들을 위해서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공기업 사유화를 선물한다. 예산이 없다고 짹짹대는 저들은 무기를 사는데는 아낌이 없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며 자유무역을 부르짖는 저들은 투기를 끌어들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전 세계적인 빈곤의 원인은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를 짓누르는 경제 위기는 바로 저들이 만들어낸 위기, 자본의 위기다.

우리는 이제 저들만의 잔치에서 우리의 삶을 되찾아 오려고 한다. 모

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堂堂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장애, 성적체성 등의 차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우리의 권리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말해줄 수 없다. 바로 우리가 외칠 것이다. 빈곤에 갇혀 버린 우리의 권리를 석방하라!

가난하기 때문에 꿈조차 꾸지 못했던 미래를 되찾아 오자. 안정된 일자리와 적절한 소득, 살 만한 집과 풍요로운 배움, 건강한 삶과 문화 향유의 권리를, 이제 외치자. 우리는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각자의 권리를 들고 모였다. 각자의 '몫소리'로 연대하는 과정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우리의 권리가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시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질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마침표를 찍고 가진 자들만의 정권을 뒤집어엎을 우리의 저항이 바로 우리의 권리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우리의 권리!

<우리의 요구>

1. 불안정한 주거와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못살겠다!
보편적 권리로서 주거권을 쟁취하자!
2.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으로는 못살겠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3. 바닥생존 강요하는 최저임금(78만원), 최저생계비(46만원)으로는 못살겠다!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4. (보육, 방과후학교,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때문에 못살겠다!

사회복지 예산 확충하고, 공적 사회서비스 보장하라!

5. 교육, 의료, 물, 전기, 가스 내다 파는 이명박 때문에 못살겠다!

평등한 공공서비스의 권리 보장하라!

6. 1% 부자만을 위하는 빈곤과 불평등 확산 주범 이명박 때문에 못살겠다!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하자!

*2008년 10월 17일 세계 빈곤철폐의 날 참가자들이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선언하다.

빈곤에 갇힌 권리를 석방하라

조승화 | 빈곤사회연대

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라고 일컬어지던 경기 침체가 극복되었다는 듯 정부와 언론은 경기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 장담한다. 하지만 서민, 노동자로 일컬어지는 다수의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다.

열심히 일해도 빈곤한 삶

경제 위기일수록 부자들은 부동산 투기와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빈곤층은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게 해주던 월급마저 삭감되거나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경제 위기의 첫 번째 희생양은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가장 먼저 직장을 잃거나 더욱 불안정한 일자리와 실업의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현재 빈곤층 10명 가운데 3명은 일을 하고 있어도 불안정·저임금 일자리로 역시 근로빈곤층에 머물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실업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2008년 실질 실업자수는 약 290만 명에 이른다. 특히 청년층, 여성, 고령층은 실업뿐 아니



빈곤은 차별의 원인이면서 결과이기도 하다.

라 불안정·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려 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거나 포기하고 있다. 현재 청년층은 전반적인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 학업 이후 오랜 실업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남성에 비해 더욱 열악하고 불안정하며 비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해온 여성 일자리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이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이들이 불안정·저임금 일자리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한국의 주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는 온갖 개발로 원주민들을 더욱 열악한 주거로 내몰고 있다. 서울의 그림자진 곳에서는 집이 없어 거리에 자신의 몸을 누여야 하는 이들을 언제나 볼 수 있다. 이들은 추위와 배고픔뿐 아니라 차별의 시선과도 싸워야 하며, 그중에서 거리에서 죽어가는 노숙인이 IMF 이후 4년간 연평균 400여명(민의를 통계)에 이른다. 도시 빈곤층의 마지막 거처인 쪽방과 비닐하우스촌 거주자들은 재개발로 쫓겨나고 있으며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개발정책은 중산층 위주의 삶의 공간만 계속해서 짝어내듯 만들고 가난한 원주민, 영세 상공인 및 노점상들은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고 도시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배고파서 못살겠다

빈곤은 더 이상 가려진 그림자라고 말할 정도로 도시 곳곳에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와 실업, 열악한 주거, 개발에 밀려나는 원주민들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하지만 빈곤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은 생색내기에만 급급하며 일자리 정책도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단

기 일자리를 만드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뉴타운 개발, 4대강 사업 등으로 더욱더 개발정책을 가속화하며 부자와 상위 1%의 재벌기업들을 위한 감세와 민영화 정책을 단행하고 있다. 도시 내 빈곤이 노골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성장과 개발의 신화에 갇혀 있다.

열심히 일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빈곤층은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업과 불안정한 주거, 경제적 고립, 차별 등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여성, 고령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하루하루 빈곤과 싸우며 살아가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어떠한 희망도 가지지 못한다. 이것이 현재 성장과 발전 논리에 가려진 한국의 노동자, 서민들의 현실이다.

더 이상 우리는 빈곤 극복을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친재벌적 편향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 땅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어나 빈곤 없는 세상을 향한 목소리, '배고파서 못살겠다' 라는 생존의 몫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모아야 함이 절실하다.

빈곤에 맞선 목소리들

10월 17일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철폐의 날이다. 이날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 노숙인, 쪽방 주민, 개발에 밀려난 원주민, 비닐하우스촌 주민, 노점상들과 사회운동단체 등 400~500여 명이 모여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을 선포하였다. 이는 빈곤층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

는 빈곤 문제를 제기하고, 상실된 자신의 권리들을 찾겠다는 선포였다. 빈곤은 차별의 원인이면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빈곤은 사람을 무권리의 상황에 놓이게 한다. 집을 잃거나 없는 이에게 집을!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빈곤층에게 복지의 확대를! 소수자 차별이 없는 세상을! 이러한 요구를 하며 권리로 선포하는 자리였다.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빈곤 없는 세상'이라 하면 불가능하고 공상적인 얘기거나 너무나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이지만,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속에서 빈곤철폐를 위한 하나의 걸음을,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 시작일 수 있는 미래의 '빈곤 없는 세상'을 향한 싹을 발견한다. 빈곤 없는 세상은 빈곤에 처한 대중들이 자신의 인권을 선언하는 권리선언의 과정을 통해서만, 빈곤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고 빈곤과 불평등 철폐의 출발점을 마련함으로써 앞당길 수 있다. 10월 17일 진행된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빈곤을 확산하는 원인과 주범을 밝히는 것이요, 둘째는 바닥 수준의 생존을 거부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빈곤에 처한 대중들의 빈곤 없는 세상을 향한 인권선언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매해 10월 17일 세계 빈곤철폐의 날이 되면, 빈곤으로 인해 무권리 상황에 놓인 대중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더욱 크게 빈곤철폐를 외치고 이를 위한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이 목소리가 더욱 커지기를 희망한다. 또한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의 선포와 몸짓들이 결국 만들 '빈곤 없는 세상'을 희망한다.

빛 없는 세상을 향한 2008 금융피해자 권리선언 금융채무의 쇠시슬을 끊자

정권이 바뀌고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한국 민중들의 삶은 10년 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금융채무자 780만 명!

가계부채 660조 원, 가구당 부채 4천만 원으로 사상 최대! 전체 가구 중 빚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부채는 평균 8000만원에 이른다. 2008년 상반기 자영업자 수는 594만 5000명으로 그 수가 600만 명 이하로 줄어든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반면 대출은 오히려 늘어났다. 청년 실업자는 300만 명에 이른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액은 2007년 2조 1296억 원으로 1년 새 31%나 급증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한 연체자 수가 1년 반 동안 2배로 급증했고 연체금액도 약 23배 증가했다.

굳이 위와 같은 통계자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되어 온 빈곤은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회, 일을 해도 가난한 사회는 빈곤과 채무의 악순환 속에서 나아지기는 커녕 또다시 더욱더 깊어지는 빈곤과 채무의 늪을 경험하

게 한 것이다. 여기에 불법 채권추심까지 더해져 금융채무자들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민중들의 삶은 한국 사망 원인 4위 자살, 2007년 한 해 자살자 1만 2174명, 하루 평균 333명 자살, 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5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그들이 혼자 감당해야 했을 빈곤과 채무라는 삶의 무게에 대해 우리는, 그리고 사회는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세계 경제 대국 11위 한국의 자화상이다.

10년 동안 민중들의 삶을 끓게 만든 진짜 주범은 고금리와 빈곤이다. 10~20%의 다른 선진국 이자율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우 30~49%의 고금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무원 1명당 2000개가 넘는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등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신용이 좋지 않은 780만 금융채무자들은 800%에 달하는 일삿돈까지 빌려가며 살아가고 있다.

민중들의 삶이 이렇게 처참한데도 이명박 정권의 금융채무 정책은 여전히 대부자본과 금융자본만을 살찌우고 있다. 2008년 9월 3일 780만 금융 소외자를 구원하러 오신 양, 신용회복기금이 출범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던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한 치도 다를 바가 없다. 더 어이없는 것은 채권을 원금의 10% 내외 가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들여 채무자들에게는 노예 기간에 가까운 8년 동안 채무 원금을 모두 나누어 갚으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 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금융채무자들에게 도덕적 해이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자연스레 개인파산 급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아도 1201이라는 특수코드로 사회적 차별을 받으며 매순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IMF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가속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금융피해자! 더 이상 빚진 죄인이라는 사회의 억울한 누명 속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살 수 없다.

신용불량자도, 도덕적 해이자도 아닌 인간으로서 금융피해자의 권리를 쟁취해나가고 모든 이들이 빛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780만 금융피해자들은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요구하는 바이다!

- 누구나 신용상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면책자·금융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결하라!
-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인권유린 사각지대 불법 채권추심 해결하고 금융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 누구나 빈곤하지 않고 빛 없이 살아갈 권리가 있다.
- 빈곤과 금융채무 악순환하는 이명박 정권의 금융채무정책 중단하라!
-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하고 살인적 고금리 정책 철회하라!

* 2008년 11월 21일 금융피해자행동의 날 참가자들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앞에서 선언하다.

신용불량자가 아닌 금융피해자로서다

이혜경 |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2007년 초 보수 언론과 금융사들은 2006년 파산 신청자가 12만 명이 넘었다며 한국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했다. 하지만 1962년 제정되어 35년간 잠자고 있던 파산법이 1997년 첫 파산 신청자로 눈뜨게 된 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는 한국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금융자본들은 노동 유연화 정책과 내수 시장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가속화한다.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이 일상화하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게 된다. 길거리 가판대에서 수많은 선물 더미를 쌓아놓고 호객행위를 하던 카드사들의 모습 또한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혹은 생계가 어려운 민중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1997년 사실상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사라지고 1998년 IMF의 권고로 25%로 상한선을 제한해오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고, 1999년 70만원



신용불량자가 아니다. 금융피해자다.

의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로 카드 돌려막기를 유도하고, 2002년 들던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는 과정은 2004년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의 서막을 여는 데 충분한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IMF로부터의 구제금융은 곧 초국가적 자본들에게 한국시장을 전면 개방한 것과 같다. 실제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로 10년 전과 비교할 때 지금 한국의 대부업 시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3~4천 개에 달하던 대부업체수는 이제 4~5만 개 수준에 이르렀으며, 4~5조 원에 해당하던 대부업 시장은 20~500조 원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2007년 한 연예인의 자살로 대부 시장의 야만성이 드러나며 반짝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담당자 1인이 2~3천 개의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은 IMF 조기졸업을 자축하며 일찍이 삼폐인을 터뜨렸지만 그 후 10년 동안 민중들의 삶은 빈곤과 금융채무의 악순환이었다. 정권이 바뀌고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한국 민중들의 삶은 10년 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민중들의 삶이 처참한데도 이명박 정권의 금융채무정책은 여전히 대부자본과 금융자본만을 살찌우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대선 당시 금융채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 4대 특별정책을 위시하여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채무자들의 채무탕감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 대사전 등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는 당선되자마자 휴지 조각이 되었고, 2008년 9월 신용회복기금을 만들어 780만 명의 금융채무자들을 구원하려 온 것이 양 선전을 해댔다. 하지만 그 이면은 대부업들보다 야만적이다. 채권사들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로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에게는

100%를 8년에 나누어 갚으라고 하는 채권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금융채무자들에게 도덕적 해이자로 내모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자연스레 개인파산 급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아도 1201라는 특수 코드로 사회적 차별을 받으며 매순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하여 2007년 11월 21일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날은 IMF 체결일이기도 하여, 빚진 죄인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금융채무자들의 현실을 폭로하고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권리선언의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다음의 세 가지 인권선언을 하게 되었다.

① 누구나 신용상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면책자 금융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결하라! ②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인권유린 사각지대 불법채권추심 해결하고 금융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③ 누구나 빈곤하지 않고 빚 없이 살아갈 권리가 있다. 빈곤과 금융채무 악순환하는 이명박 정권의 금융채무정책 중단하라!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하고 살인적 고금리 정책 철회하라!

금융사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놓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삶의 의지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채권사들의 인권침해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 무엇보다 빚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선언 내용을 만들게 되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준비하고 처음 이러한 방식을 고민하다 보니 지난 후에 아쉬운 점이 많다.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선언의 내용들을 다양하게 듣고자 했으나 시간상의 촉박함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금융채무자들의 문제를 인권의 측면에서 풀어낸다는 것이 많은 국민과 연구와 논의가 필요했었구나 하는 뒤늦은 후회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만든 권리선언을 금융채무자들을 가장 억압하고 있는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추심지에 금융피해자 당사자들이 직접 쓰고 그것을 들고 행진하는 과정들은 함께했던 금융피해자 당사자들에게 자신감과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신용불량자도, 도덕적 해이자도 아닌 금융피해자라는 외침은 금융채무에 대해 금융세계화로 인한 빈곤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리고 빚진 죄인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정치를 실현해나가겠다는 의지이다. 2008 금융피해자 권리선언 운동의 아쉬운 점들은 이후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을 준비해나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거름이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경제 도구에서 '사람'으로

이곳 한국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경제 도구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존엄과 인간의 권리는 국적과 경제적 능력이라는 벽 너머, 우리 밖에 존재할 뿐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가 외면되는 다문화 사회는 거짓이다. 이주노동의 권리가 경제 도구를 사용할 권리로 왜곡된 사회, 우리 앞에 온갖 수식을 붙여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 이주노동의 권리와 차별철폐를 위한 외침에 강제추방만이 처방인 사회, 국적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사회적 권리와 평등이, 노동의 권리와 가치가 부정되는 사회, 이 한국 사회의 다문화는 모두 기만이다. 15년 전 우리 선배들은 한국 사회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하기 위해 온몸에 쇠시슬을 감았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선배들 스스로 읊어왔던 차별과 억압의 쇠시슬을 끊으려 한다. 이것은 우리를 사람이 아닌 경제 도구로만 이용하려는 모든 정책과 시선에 대한 저항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단기순환 이주노동정책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 필요할 때 쓰다 폐기하면 그만인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대한 이해와 배려 없는 단기순환 정책은 반인권과 차별의 시작이다. 경제 도구는 필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갈 사람은 싫다는, 한국 사

회의 시선과 가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며 이제는 이주노동자 권리가 보장됐다며 큰 시혜를 베푸는 척 선전을 했지만, 단기순환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 이주노동자는 영원히 일하는 기계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 이곳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 한국 사회 스스로의 필요와 정의도 부정하는 단기순환 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원하는 곳에 정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는 인간사냥식 강제단속추방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신체의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정반대다. 비랑 끝으로 몰아넣고 '뛰어내릴 테면 뛰어내리라'며 주먹을 휘두르는 무법의 시대다. 신체의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도 피부색과 국적 앞에서 무색해진다. 우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인간사냥식 단속을 집행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자신들의 반인권적, 불법적 행위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우리를 영원히 일하는 기계로 남겨두기 위해 우리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행되고 있는 인간사냥식 단속추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존엄과 생명을 지킬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제약되고 있는 지금의 고용허가제를 거부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의 권리 대신 사용자가 가진 고용의 권리만이 일방적으로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예측 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로 고용허가제는 부정한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결성한 권리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는 노예노동자다.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가 이미 무너진 한국 사회에서 피부색과 국적으로 갈린 우리는 최저임금마저 주기 아까운 낮은 기계일 뿐이다. 한국 정부는 체류 자격 유지를 미끼로, 인간사냥식 단속추방을 무기로 이 불평등한 제도를 유지하려는 인간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와 노동의 권리를 아는 이 땅의 노동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 우리는 이 땅의 노동자, 사람이다. 언제까지나 불쌍한 외국인 이기를 바라는 한국 사회의 시선을 오늘 우리는 당당히 거부한다. 10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해도, 햇빛 한 줌 안드는 공장 한 칸 컨테이너 박스에서 전기담요 하나로 한겨울을 견뎌도, 신입사원이 10년차 우리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도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미소를 보내야 할 것 같은 불쌍하고 고단한 일 기계가, 더 이상 우리는 아니다. 한국 사회의 노동자로서 세금을 내고, 이 땅의 국민들에게 보장된 보편적 권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이 땅의 노동자,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모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행동해야 할 권리가 사회적 연대의 권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의 모든 차별에 손을 내민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등 이 땅의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민다. 그래서 더 커진 우리는 분명 한국 사회를 좀 더 평등하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으로 밀고 갈 것이다.

*2008년 11월 30일
'이주노동자 살인적 단속추방 중단과 인권·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선언하다.



신체의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도 피부색과 국적 앞에서 무력해진다.

From Economic Tools to Human Beings — Migrant Workers'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e are mere economic tools here in South Korea. The dignity and rights that every human should enjoy only exist beyond our reach, outside the barriers of nationality and economic capacity. Yet Korea has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A society that neglects dignity and basic human rights cannot be truly multicultural. Korea is a society where right to migrant labor are distorted into the right to use economic tools, where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is encouraged with every modifier on earth, where the only response to the clamor for right to migrant labor and abolition of discrimination is forced deportation, and where nationality and economic capacity define social rights, equality, and the value of labor. The so-called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is a deception. Fifteen years ago, our predecessors volunteered to be confined in chains to expose the hypocrisy and falsehood of Korean Society. But today, we are going to break these very chains of discrimination and suppression. This is our resistance to all the policies aimed to use us as economic tools.

We refuse Korean government's migrant labor policy of short-term cycle. For we are not machines easily used and disposed in case of need. A short-term cycle policy without an understanding and concern for people means an onset of discrimination and anti-human rights. It's a barometer that shows the contradiction of Korean society, which clamors for economic tools but not the neighbors to live together. It advertised to be so generous when it passe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bill, saying that the rights of migrant who Emp are now guaranteed. However, we migrant who Emp would remain as working machines as long as the short-term cycle policy continues to exist. We have already settled down in this country, but the short-term cycle policy denies this fact, regardless of Korean society's own need and justice. It should be abolished immediately. We have the right to settle down wherever we want to.

We refuse the forced deportation that infringes on human dignity like a witch-hunt. Every person has a personal freedom and the right to that freedom, which should be protected. However, our reality is exactly the opposite. It is chaotic and lawless, saying 'do whatever you want if you can' after cornering us to the edge of the bottomless cliff. The minimum right to personal freedom cannot find its place before the color of skin and the nationality. The Korean government's claim that its ruthless regulation is to protect our human rights and stabilize the society is a mere lie

to hide its illegal deeds of anti-human rights. The regulation and deportation, which are carried at the expense of our lives to make us the perpetual working machines, should be stopped immediately. We are humans with rights to our own dignity and lives.

We refuse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that restricts our rights to our labor and the values thereof. It denies the three labor rights (right to organiz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right to strike) that should be guaranteed for every worker, and it only guarantees the rights to employment instead of the right to labo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lso denies the right not to be held in slavery or servitude. We are slave workers deprived of right to organize labor union and the freedom to move from workplace to workplace. In a society where the right to earn the same amount of wage for the same amount of labor has already been infringed, we are mere obsolete machines who can barely earn the minimum wage. Korean government should stop this effort to maintain this unequal policy. It should stop its brutal regulation/deportation and the threat to alter migrant workers' status of residence. We are humans with freedom to choose our occupations, and we know the value of our work and our rights to labor.

Yes, we are the workers on this land, and at the same time the humans. We reject the Korean eyes that want us to remain poor and miserable. This workaholic machine, which always smiles

despite its 10-year exile from family, sleep in a container box without any sunshine or heater, and the fact that a rookie Korean earns more than 10-year veteran migrant worker, is not us any longer. We are the workers and humans who pay tax as Korean workers and have the rights to enjoy universal rights and public service guaranteed to all the citizens in this nation.

And we know that it is the solidarity rights that we need to exercise in order to realize all the aforementioned rights. We know only too well. Thus, we give our hands to all the discriminations in Korean society today, to those who resist the discrimination against nonstandard workers, women, farmers, the disabled, sexual minorities, and much more. In the end, we will make Korea a more equal society, and furthermore make it a world where human rights are fully guaranteed.

Participants of the convention to urge the government to stop brutal regulation/deportation of migrant workers and guarantee human rights and labor rights

11/30/2008

이주노동자 권리선언, 구색 맞추기 혹은 저항하기

이주인권연대 활동가들

방글라데시 출신의 니폰 씨는 올해 한국 생활 14년차다. 22살에 입국했으니 청춘을 온통 한국에서 보낸 셈이다. 그는 살고 있는 인천의 지리를 복잡한 버스노선까지 훤히 꿰고, 10년째 다니고 있는 공장에서는 공장장이 되었다. 대신 고향 방글라데시의 기억은 가물가물해져 고향 집을 찾아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한국, 인천의 부평이 그의 삶터가 된 것이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기록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어느 곳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공장에서도 공장장이지만 서류상으로 그는 직원이 아니다. 귀가 아파 병원에서 큰 수술을 했지만, 병원 기록에는 건강보험을 가진 친구의 이름만 남아 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 밖에 존재한다. 그는 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노동자다.

1980년대의 경제 호황과 스포츠 외교를 통한 위상 증진을 계기로 시작된 한국의 이주노동자 유입이 20년을 지나고 있다. 그동안의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듯 시장의 인력 수요를 미등록이주노동자와 연수생으로 채워온 기형적 외국인력 정

책은 결과적으로 니폰 씨와 같은 수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했다. 그 근간에는 노동을 하는 사람 대신 일하는 기계를 수입해 쓰겠다는 알박한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이기주의는 어느 순간 국가 주도의 다문화 사회 — 결혼 이민자만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 로 포장되어 현실을 왜곡시키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리하여 니폰 씨는 이 땅에서 없는 존재가 되고, 있더라도 다문화 사회를 위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 아니면 구색 맞추기로 지면을 채울 뿐이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에 도 니폰 씨는 세계 밖에 있었다. 그러다 또 잠깐이 세계로 불려와 사진을 찍고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다.

모든 이주자를 옥죄는 건 체류 자격이다. 체류 자격에 따라 국경의 문을 달거나 대우를 달리하는 건 국가 주권으로 신성시되고 있다. 그것에 시비를 걸면 매국노가 되거나 이상주의자가 되어버린다. 2004년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2007년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제도가 사라지면서 이주노동자 인권은 '합법'이라는 단어에 갇혀 숨통이 막혀버렸다.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사업장이동이 금지된 반노예 상태는 합법이 되었고, 미등록노동자의 노동과 기본권은 모두 불법이 되어 이 땅에서 짝퉁이 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다문화 사회이고, 경기도 마석에서 대규모 인간사냥이 자행된 이유다. 합법과 불법, 국가 주권이라는 큰 벽 사이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메아리칠 뿐이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메아리를 쫓아 허둥대는 길 잃은 양떼가 되었다.

니폰 씨처럼 고향보다 한국 생활이 더 익숙하고 편한 노동 이민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책임의 많은 부분을 지고 있는 한국 정부가 외국 인력에 대한 단기순환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법·불법에 상관없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없다. 그 정책 속에는 일하는 기계만 있을 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이 아닌 일하는 기계를 잠깐 수입했다 시간 지나면 버리겠다는 정책에 그 어떤 인간에 대한 존중과 권리 보장을 기대하겠는가. 이주노동자 권리선언은 합법과 불법 사이, 혹은 그 너머의 보편적 인간에 대한 권리선언이다. 뿌리 깊은 단일 민족 환상과 세계적 경기 침체가 그 벽을 더 견고하게, 더 높이 쌓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인권선언이 그렇듯 선언으로서, 가치로서, 목표로서 이주노동자 권리선언은 벽을 향한 돌진이자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다.

그런데 이주노동자 권리선언에 이주노동자가 없다. 문장 속에 존재할 뿐이다. 이주노동자 당사자들 스스로의 몸값과 고민, 인권에 대한 감성과 절박함 대신 한국인 활동가의 체험과 시선으로 만들어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망함으로 얼굴이 붉어진다. 그래도 계속 써왔고 쓰고 있는 건 우리 운동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연대의 몸짓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권리선언이 다른 권리선언들과 형식이 다른 이유는 이주노동자 집회를 염두에 두고 쓰였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의 말을 넣기 위해 선언문 아래 요구 조항을 집회장에서 같이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진행하지 못해 결국 한국인 활동가가 쓴 선언문만이 권리선언에 실리게 되었다. 이주노동자 권리선언문이 나온 과정은 별다른 게 없지만, 그 내용이 만들어진 과정은 지난 20년간 고단하고 지난했던 이 땅 이주노동자들의 역사 그 자체다. 또한 그것은 앞으로 만들어갈 이주노동, 이민노동의 길이기도 하다.

2008 HIV/AIDS 감염인 인권선언

감염인 인권 지지 1201명 '레드리본' 페이스 선언을 모아

우리 모두는 HIV/AIDS 감염인입니다. HIV/AIDS 감염인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 치료접근권 등의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겪을 수 있으며 그래서 그들의 인권이 곧 우리의 인권입니다. HIV/AIDS 감염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질병의 위험성을 알리는 지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의 소수성을 발견하고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이 사회의 모순을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에이즈의 효과는 긍정적이며 우리를 끊임없이 반성하게 하고 권리를 주장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HIV/AIDS 감염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감염인 인권 지지 1201명 '레드리본' 페이스 선언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감염인과 비감염인이라는 경계 구분을 넘어 최상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가 도달되는 순간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 인권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1.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에 반대합니다

"에이즈는 질병일 뿐, 차별의 근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감기 환자에 대한 대우가 같아지는 날까지 지지하겠습니다."